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97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정춘숙・김정호・김윤덕

윤후덕 • 박재호 • 장경태

이용빈 · 임종성 · 김경협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 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 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 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 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치매실태조사 실시 근 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 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 제14조의2, 제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 다. 제16조의3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 라.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 마.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한 15명"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 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을 "치매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 1. 치매관리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지원
-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지원
-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 8.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 9. 법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의 지원
- 1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 12.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기능 지원
- 13.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16조의2제1항제7호 중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을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 9.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제17조제2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혀 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신 설>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 센터 나. 제16조의2에 따른 광역치 매센터 다. 제16조의3에 따른 공립요 양병원 라.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 심병원 마.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 센터 바.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수행 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 체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하여 20명 -----.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된다.

③·④ (생 략)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 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 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 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 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 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 1. 치매관리수행기관에 대한 기 의 추세 및 수요 예측
-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5. 삭 제
-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 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 무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신 설>
-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 9. (생략)
- 10. 치매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 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 관리종합계획의 시행결과 평 가 지원
 -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 사업 지원
- 6. <u>치매관리사업----</u>

 -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 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 8.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 지원
 - 9. 법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 원
 - 1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2.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 센터 기능 지원
 - 13.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4. • 15.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 <삭 제>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보급

- 11.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지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 6. (생 략)
 -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신 설>

<신 설>

- 8. (생략)
- ②・③ (생략)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u>16</u> .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법인·단체</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_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8.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u> 후견사무의 지원</u>
<u>10</u> .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의2. (생략)

<신 설>

<신 설>

7. (생략)

③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 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 보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